

## 연구조교에 관한 내규

1993. 1. 15. 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조교(Research Assistant)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정의) ①이 내규에서 연구조교라 함은 본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 그 교원의 연구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.  
②이 내규에서 교원이라 함은 연구조교의 보조를 받는 교원을 말한다.
- 제 3 조 (자격) 연구조교는 본교 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라야 한다.
- 제 4 조 (기간) 연구조교의 임용기간은 1학기로 하되 그 기간은 학기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인이 누계 4학기를 초과하여 연구조교가 될 수 없다.
- 제 5 조 (연구조교 수의 제한) 교원이 한 학기당 보조받을 수 있는 연구조교는 2인 이내로 한다.
- 제 6 조 (의무) ①연구조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본교의 교육방침을 따라야 하며, 교원의 지도를 받아 연구 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 
②연구조교는 제1항에서 정한 연구 이외에 시험감독, 과제물 평가, 교원의 강의를 대신할 수 없다.
- 제 7 조 (근무 시간) 연구조교의 근무 시간은 주 2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시에 정한다.
- 제 8 조 (장학수당) ①연구조교에게는 교원의 연구비에서 장학수당을 지급한다.  
②제1항의 장학수당의 지급액은 임용시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  
③연구조교의 장학수당 지급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- 제 9 조 (신청 절차) ①연구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 학기 개시 4주일 전까지 연구조교의 임용을 원하는 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1. 연구조교 임용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 
2. 연구조교 카드(별지 제2호 서식)  
3. 최종 학위증명서 1통  
4. 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  
②제1항의 서류를 받은 교원은 지원자의 자격과 능력을 판단하고 임용여부를 학과장과 협의한 후 매 학기 개시 2주일 전까지 학장 또는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에게 추천한다.
- 제 10 조 (임용 등) ①연구조교는 총장이 임용한다.  
②총장은 연구조교가 제6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

연구조교에 관한 내규

- ③총장은 연구조교로 근무한 사실에 관한 사실증명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교부할 수 있다.
- ④연구조교에 대한 사무는 연구처 연구과에서 담당한다.

부 칙(1993. 1. 15. 제정)

이 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연구조교에 관한 내규

(서식 제 2 호)

대학(원), 연구소: \_\_\_\_\_  
 이 름(한 글): \_\_\_\_\_

연구조교원 카드 (No. )

사  
 진  
 (3×3.5cm)

이 름	(한글)	(한문)	(영문)
생년월일	년 월 일	주민등록번호	-
본적		주 소	전화
			전화
호주명		소	전화
			전화
학 력	. . .부터 . . .까지		학위
	. . .부터 . . .까지		학위
	. . .부터 . . .까지		학위
경 력	. . .부터 . . .까지		
	. . .부터 . . .까지		
학 력	. . .부터 . . .까지		
	. . .부터 . . .까지		
근 무 기 록 학년도 제 학기(추천교원: ) 주당 근무시간: 시간 학년도 제 학기(추천교원: ) 주당 근무시간: 시간 학년도 제 학기(추천교원: ) 주당 근무시간: 시간 학년도 제 학기(추천교원: ) 주당 근무시간: 시간			특별 기재 사항 작성일: 199 . . . 이름(본인) (인)

이화여자대학교

(서식 제 3 호)

제 호

사 실 증 명 서

이 름:

생년월일: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생

주 소:

학년도    제    학기(주당    시간)

학년도    제    학기(주당    시간)

학년도    제    학기(주당    시간)

학년도    제    학기(주당    시간)

위와 같이 연구조교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함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이화여자대학교    총 장    ○ ○ ○ (인)